#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23

발의연월일: 2021. 4. 21.

발 의 자:주철현·권인숙·김회재

서삼석 · 소병철 · 송기헌

송재호・신영대・양정숙

윤준병 • 이병훈 • 정일영

조오섭 · 홍정민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는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도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수급전용계좌 조문이 신설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정작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·부상·장해

를 보상하기 위한 현행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는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도 수급전용계좌 조문을 신설하고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 신설).

##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보험금수급전용계좌)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"보험금 수급전용계좌"라 한다)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 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·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없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서 이법 시행 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6조의2(보험금수급전용계좌)
	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
	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
	좌(이하 "보험금수급전용계좌"
	라 한다)로 입금하여야 한다.
	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
	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
	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
	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
	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
	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·
	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
	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7조(수급권의 보호) ①・②	제17조(수급권의 보호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
### <신 설>

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 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 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